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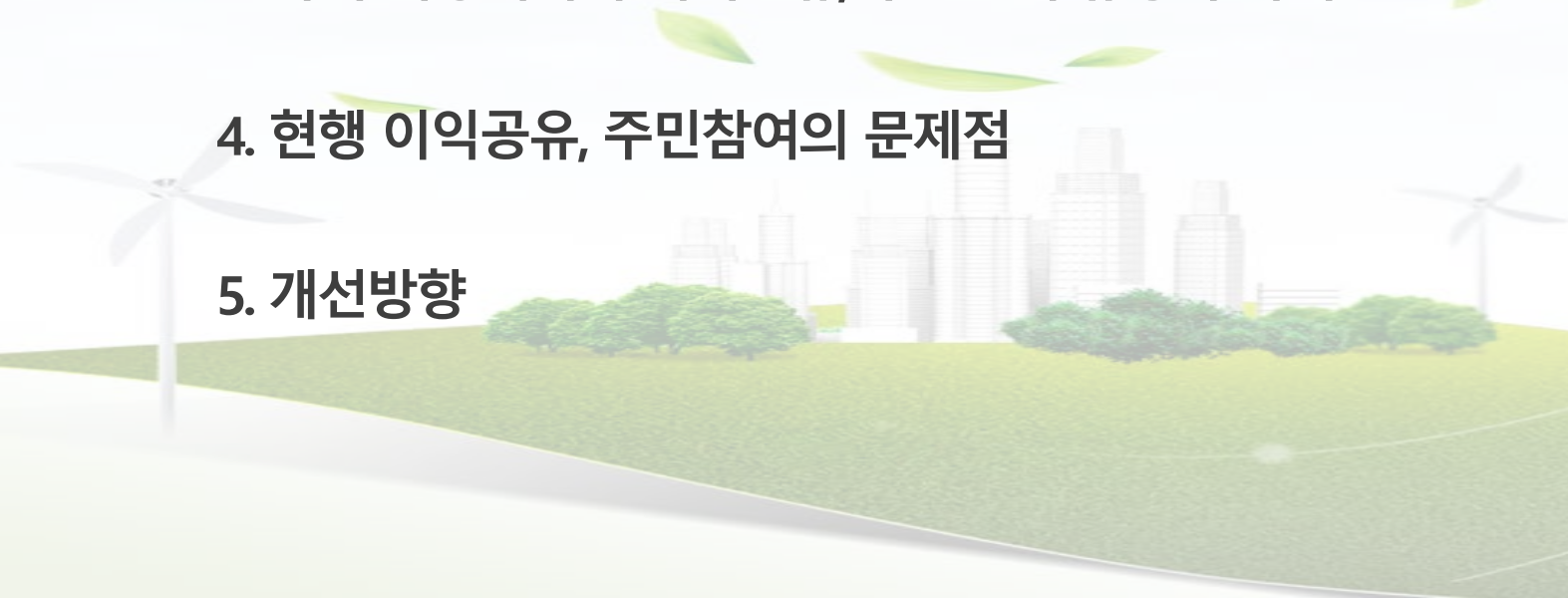
국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현황과 개선 방향

2022.04.13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연구원

목 차

1. 이익공유의 정의
2.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현황과 제도
3. 국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주민참여 유형과 사례
4. 현행 이익공유, 주민참여의 문제점
5. 개선방향



1. 이익공유의 정의

■ 이익공유의 정의와 취지

- ▶ **이익공유란?** 사업자가 절차 안에서 보상을 이행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개발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것

작성기관	정의	취지
월드뱅크 (2019)	• 재생에너지 발전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혜택을 식별, 극대화 및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	• 투자의 광범위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 및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로 인식
영국정부 (2014)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사회에 프로젝트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경제, 에너지 안보 및 환경 혜택을 넘어 실질적인 사례(rewards)를 주는 것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이점과 가치를 해당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함. 지역이 경제, 사회 및 환경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유연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스코틀랜드정부 (2018)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인허가 절차 외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추가적이고 자발적인 조치(additional voluntary measures) 로, ①개발자가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자발적 혜택 (현물 지원, 프로젝트 직접 자금 조달 또는 기타 자발적인 사이트 별 혜택) 및 ② 피해보상과 관련이 없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금전적 지불	• 재생에너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특정 지역과 그룹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발 기간동안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함

1. 이익공유의 정의

■ 이익공유와 주민참여의 관계

이익공유(Benefit Sharing)

- ▶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금전적 수익의 일부를 배당, 임대료, 전기료 감면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와 공유

지역사회 기금

부지 임대

현물 편익

지역 고용/계약

에너지 가격 인하

주민참여 (Community Partici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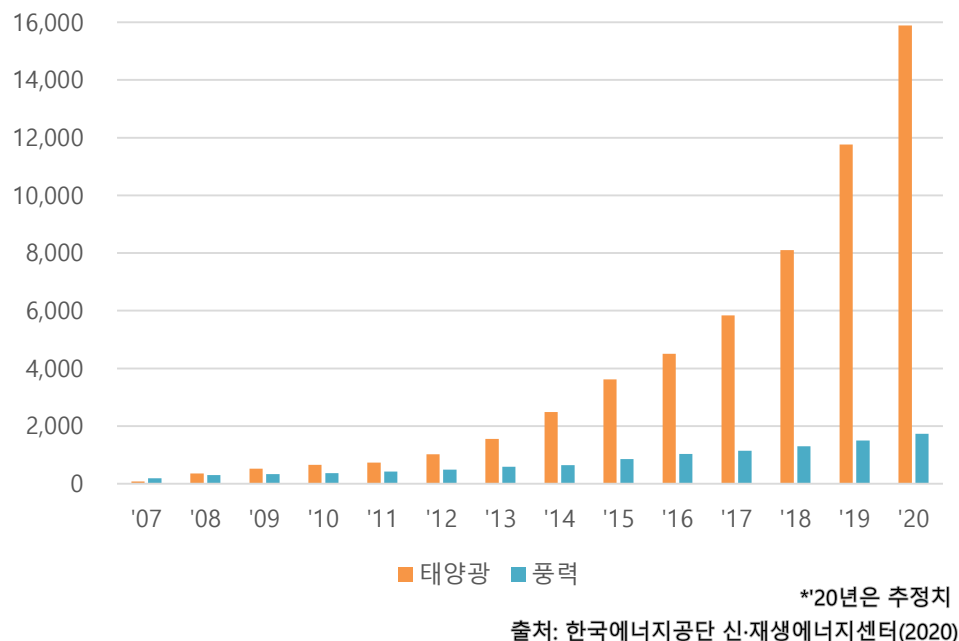
- ▶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과 투자에 참여하여 금전적 이익을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개발

👉 적극적 이익공유

2.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현황과 제도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국내 태양광, 풍력 보급 현황(누적)>



- ❖ 2020년 기준, 국내 태양광은 15.9GW, 풍력은 1.7GW 보급
- ❖ 풍력은 2030년 12GW 보급목표 대비 실적 저조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2020.6)>

구 분	지분형	채권형	펀드형	계
태양광	24	22	4	50
풍력	-	1	-	1
합계	24	23	4	51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내부자료 (2021)

- ❖ 2018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분참여 → 펀드, 채권 인정 확대되면서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례 증가
- ❖ 현황 : '18년 1건 → '19년 7건 → '20년 6월 22건 → '21년 5월 51건(누적)
- ❖ 산업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중인 184개(24.2GW)사업 중 71개(13.7GW)가 주민참여 모델로 계획중. 대규모 개발 사례 증가 추세

2.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현황과 제도

■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 ▶ 참여주민: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km 내의 범위에 있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내의 육지(섬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반경내에 위치한 섬)에 속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주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단체
- ▶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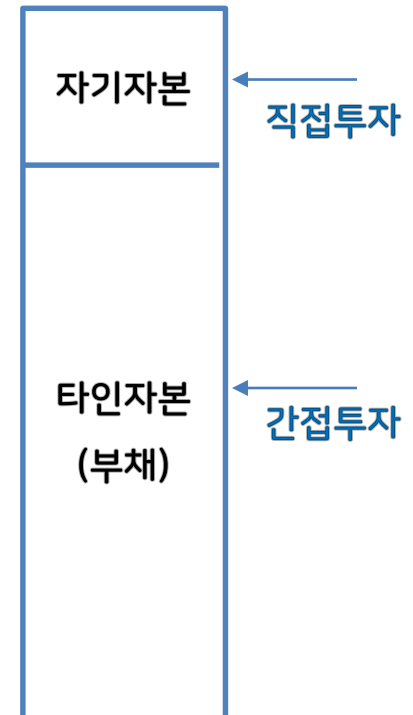
2.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현황과 제도

■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0.8	0.9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5	1.5
		3,000kW 초과부터	$\frac{3,000 \times 1.5 + (\text{용량} - 3,000) \times 1.1}{\text{용량}}$	$\frac{3,000 \times 1.5 + (\text{용량} - 3,000) \times 1.2}{\text{용량}}$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6	1.7
3,000kW 이상 풍력	육상풍력		1.1	1.2
	해상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프로젝트 재무구조>



주민참여방법은 직접투자(지분형)와 간접투자(채권형, 펀드형)가 가능하며,

주민참여형 설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투자지분율, 총사업비 대비 주민투자금 비율)을 만족해야 함

※ 직접투자: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회사(SPC)의 지분을 소유. 소유자의 일원

간접투자: 발전단지 개발에 투자자로 참여. 발전단지 지분을 소유하지 않음

2.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현황과 제도

■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이익공유 관련 주요 제도

정부 제도

녹색혁신금융사업

- ▶ 태양광, 풍력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이 발전사업에 지분, 채권, 펀드로 투자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 대상: 주민참여 요건과 동일
- ▶ 조건: 동일사업당 200억원 이내, 20년 거치 일시상환

햇빛두레 발전소

- ▶ 마을 주민(동일 행정리 거주민 30인 이상) 주도하에 마을 내 여러 입지를 혼합하여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자금을 장기저리 지원하는 사업
- ▶ 조건: 자기자본 50%이상, 동일사업당 15억원 이내

농촌태양광 정책금융 지원 제도

- ▶ 농업인이 태양광(500kW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사업비의 90%까지 정부가 저리(1.75%)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사업

지자체 제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 ▶ 신안군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과 신안군이 발전소 법인 지분율의 30% 이상 참여 지분을 갖도록 설정

제주 풍력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

- ▶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자와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체결,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개발이익의 일부(표준 당기순이익의 17.5%) 기부 받음
- ▶ 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에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제주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제도

- ▶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지정 주변마을을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로 지정, 3MW 이하의 마을 풍력발전기 1기를 건설할 수 있음

3. 국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주민참여 유형과 사례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유형분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유형분류>

선행 연구	Rebel Group (2009)	Rudolph et al. (2014)	Ernst & Young (2014)	Action Renewables et al. (2015)	World Bank (2019)
유형 분류	- 커뮤니티 펀드 <u>지역 소유</u> - 현물편익 - 지역 계약 - 지역 고용 - 에너지 가격 인하 - 간접적 편익	- 커뮤니티 펀드 <u>커뮤니티 소유권</u> - 수익의 균등 분배 <u>직접투자 & 프로젝트 펀딩</u> - 건설 & 장학금 - 교육 프로그램 - 전기요금 인하 - 커뮤니티 이익 협정 - 공급 체인에서의 간접적인 이익 - 관광을 통한 간접적인 이익	- 커뮤니티 개선 펀드 - 커뮤니티 전기요금 인하 - 지역 고용&조달 - 지주에 대한 임대료 지불 - 인접 지역에 대한 임대료 지불 <u>커뮤니티 소유권</u>	- 커뮤니티 펀드 - 현물편익 <u>지역소유</u> - 지역고용/계약	- 임대료/인접 지역에 대한 지불 <u>공동 투자/공동 소유</u> - 세금 인하/보조금 - 전기요금 인하/우대 - 지역 고용 - 지역 조달 - 지역 인프라 개발 - 커뮤니티에 대한 지불/기부/사회적 편익 제공 - 공공 서비스 - 대체 기술 훈련 - 지역 기관 역량 강화 - 환경 개선

3. 국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주민참여 유형과 사례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유형분류

<적극성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유형 분류>

이익공유(소극적)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발자가
지역주민에게 일정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 지역사회 기금
- 부지 임대
- 현물 편익
- 지역 고용/계약
- 에너지 가격 인하

주민참여(적극적 이익공유)

지역주민을 사업 투자에 참여시켜 투자수익을
얻게 하는 주민참여 방식

- 협동조합형
- 지분참여형
- 채권형
- 펀드형
- 직접사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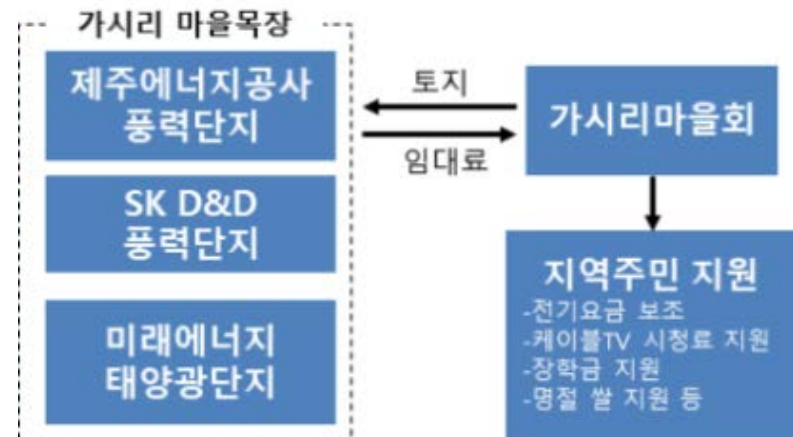
출처: 김윤성 외(2021)

3. 국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주민참여 유형과 사례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례 - 이익공유

① 제주 가시리 마을목장 풍력,태양광 단지 (부지임대형)

- ▶ 제주 가시리는 마을 공동목장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45MW 풍력단지(23기)와 16MW 태양광 단지 조성
- ▶ 사업자는 마을 목장회에 임대료 지급 형식으로 이익공유 체계 형성. 20년간 연 10억 1천만원 수준의 이익공유
- ▶ 마을회에서는 전기요금보조, 케이블방송 시청료 지원(주민 현금 지원), 장학금 지원, 명절 쌀 지원, 공동시설 정비, 노후건물 보완 등 마을복지사업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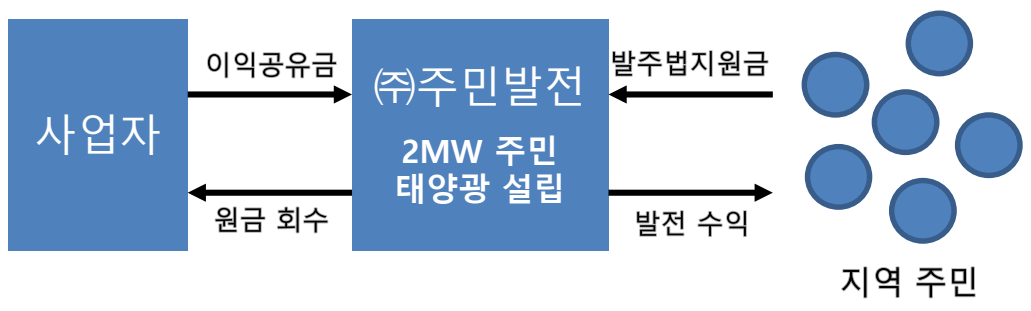


3. 국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주민참여 유형과 사례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례 - 이익공유

② 영광 풍력단지 주민태양광 발전소 기부 (현물편익형)

- ▶ 영광 백수풍력(40MW) 사업자는 사업자의 이익 공유금과 발주법 지원금으로 백수읍 주민들과 함께 (주)주민발전을 설립, 주민태양광 발전소 2MW 건설로 주민수용성 확보
- ▶ 영광풍력 등 인근 5개 마을에서도 같은 모델로 추진되어 총 6.2MW의 주민태양광 발전소가 운영됨. 인근 1,030세대 주민들은 연 810백만원의 농외 수익 창출



③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 (현물편익형)

- ▶ 철원 문혜리에 추진되는 두루미 태양광(총 200MW) 사업자는 주민전수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 마을 숙원사업 해결하는 형태로 주민 수용성 확보
- ▶ 주민 수요에 따라 다목적 센터, 게스트하우스, 마을 체험장 건축, 마을회관 리모델링, 태양광 가로등과 CCTV 설치 등 추진



3. 국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주민참여 유형과 사례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례 - 주민참여(채권형)

① 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태양광 (사모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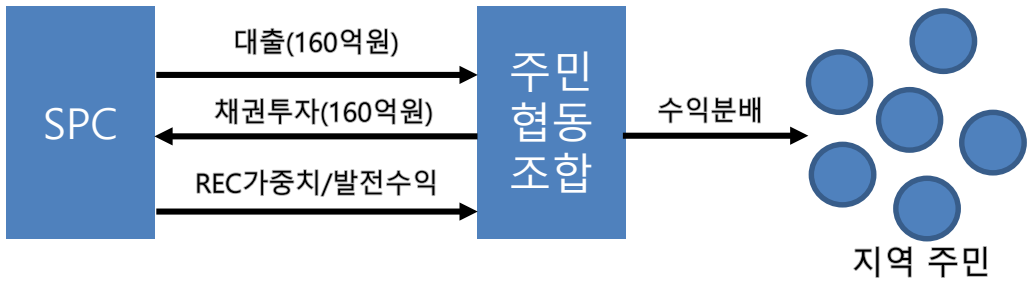
- ▶ 삼척본부 태양광 1단계 사업(2MW)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10% 규모(5.2억원) 사모사채 발행(금리 연 6%), 주민 14명 참여
- *사모채권은 지역 제한 가능/49인 이하 제한

②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채권형)

- ▶ 솔라시도 태양광(98MW)은 반경 1km 이내 5개 주민법인이 채권형으로 참여, 총사업비의 4%인 160억원을 모두 사업자에 대출받는 형태로 진행

③ 신안태양광 (채권형)

- ▶ '22년 초 폐염전 부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 신안 태양광(150MW)발전단지 준공됨. 주민참여형 사업 중 최대 규모 투자
- ▶ 주민참여: 128억(총사업비의 4%) 투자, 연간 26억원 주민조합에 이익 공유 (투자 수익률 약 20%)
- *정부 주민참여정책자금으로 90%(116억원) 조달
- ▶ 투자방식: 주민 2,875명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구성 (지도읍 주민 70% 이상 참여)하여, 채권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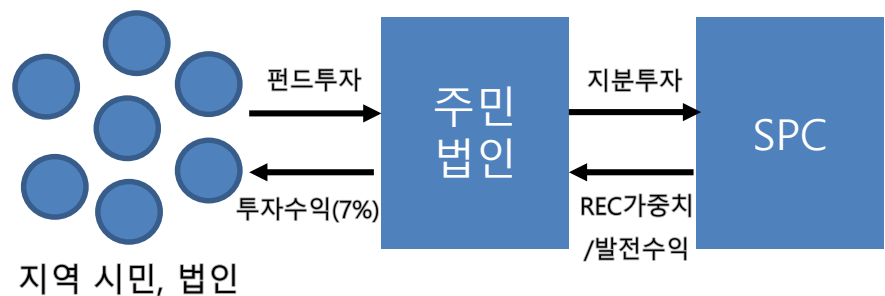


3. 국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주민참여 유형과 사례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례 – 주민참여(지분, 펀드, 직접사업형)

④ 태백 가덕산 육상 풍력, 새만금 육상태양광 (펀드형)

- ▶ 43.2MW 육상풍력사업에 주민참여 펀드 17억 조달, 태백 시민 256명 참여, 인당 평균 600만원 투자, 20년간 8.2% 수익을 분기마다 공유
- ▶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주민참여 펀드 60억원 조달 (최대 20년간 연 7% 수익 공유)



⑤ 제주 행원리, 월정리 주민 풍력사업 (직접사업형)

- ▶ 제주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제도에 따라 풍력발전지구 주변마을에 3MW 이하 마을 풍력발전기 1기 건설 (마을회 지분 출자 + 나머지 자금은 사업자/PF 통해 조달)
- ▶ 전력 판매 수익(연간 1억원)은 마을기금으로 편성, 마을 장학회 사업 및 동별로 일정 수익 매년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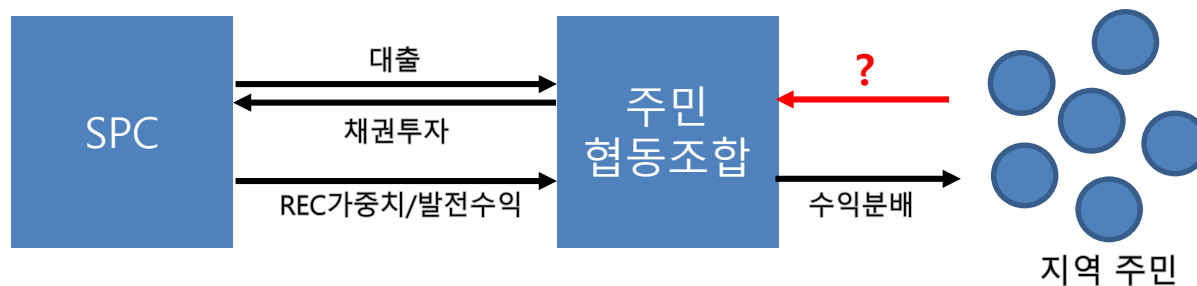
⑥ 철원 두루미 태양광 (지분형)

- ▶ 국내 최초 주민 지분투자 사업으로, 인근 지역 주민이 지분의 20%(15억) 투자
- ▶ 300가구 이상 각 1백~5백만원 투자, 예상수익률 약 20%, 투자수익금은 20년간 매월 입금

4. 현행 이익공유, 주민참여의 문제점 (1)

■ 보상금과 혼동되는 이익공유, 취지와 어긋난 주민참여 모델

- ▶ 현행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지역에서 통용되는 측면
 - 이익공유가 보상방식의 하나이며, 주민 및 조합 책임없이 PF의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 ▶ 주민들의 실질적인 투자참여 없이, 주민 채권 전부를 사업자가 대출로 마련해주는 사례가 다수 나타남
 - 사업자는 주민 협동조합에 무담보 대출, 주민들은 협동조합에 이름만 올리면 개인 자금 투자 없이 출자수익만 매월 받는 구조
 - 이러한 방식은 보편적 사회규범인 투자의 자기책임성을 만족하지 못함
 - 재생에너지 발전소 개발에 주민 현금 보상이 당연히 되어서는 안됨
- ▶ 이익공유와 보상을 구분하고, 이익공유의 취지와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익공유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피해 보상이 아닌, 인근 지역사회에 혜택과 가치를 공유하려는 취지



4. 현행 이익공유, 주민참여의 문제점 (2)

■ 정부는 현행 주민참여 모델을 이익공유 (표준 모델)로 추진중

- ▶ 정부는 사업자와 주민의 투자 부담을 최소화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모델을 이익공유 (표준 모델)로 추진중
 - 정부는 보상, 지원, 이익공유(주민참여)로 분류, 이익공유를 '주민참여를 통한 REC 가중치 우대'로 일원화
 -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이익공유를 이행하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대신 REC 지원으로 이익공유 부담
 - 또한 녹색혁신금융사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 자금의 90%를 정책자금으로 대출 지원
-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의 취지와 방향을 점검할 필요
 - 그러나, 이익공유는 보상, 지원과 확실히 구분되는 메커니즘으로,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질 필요는 없음
 - ➔ 현재 이익공유금을 온국민이 전기요금(REC 비용보전)으로 부담하는 형태
 - 향후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대형화될 것으로, 취지와 방향을 점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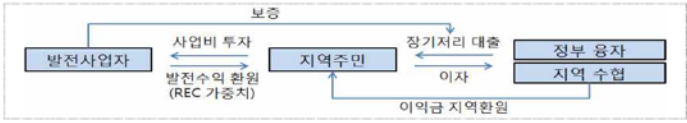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2020.7.17.)>

→ 피해보상 및 주민·지역 지원은 3가지로 투명화

- ① 수산업법에 의한 개별보상, ② 발주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③ REC 가중치(지자체추도형, 주민참여형)를 통한 이익공유

○ 수용성 확보 사업에 대해 지역수협이 발전사업자의 주민이익공유 모델에 금융기관으로 참여 → 발전·이자수익을 지역어민에게 환원

< (예시) 해상풍력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추진방안 >



4. 현행 이익공유, 주민참여의 문제점 (3)

■ 이익공유의 투명성과 관리체계 부재

- ▶ 주민참여를 통한 REC 가중치가 주민들에게 모두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체계 부재
 -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 그러나 사업자들이 가중치 우대로 발생한 수익보다 낮은 금액을 이익공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 ▶ 마을 협동조합 출자 배당이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주민참여 가능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잉여금의 1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이후 잉여금의 50% 이상은 이용고 배당하고, 출자배당은 10% 미만 수준이어야 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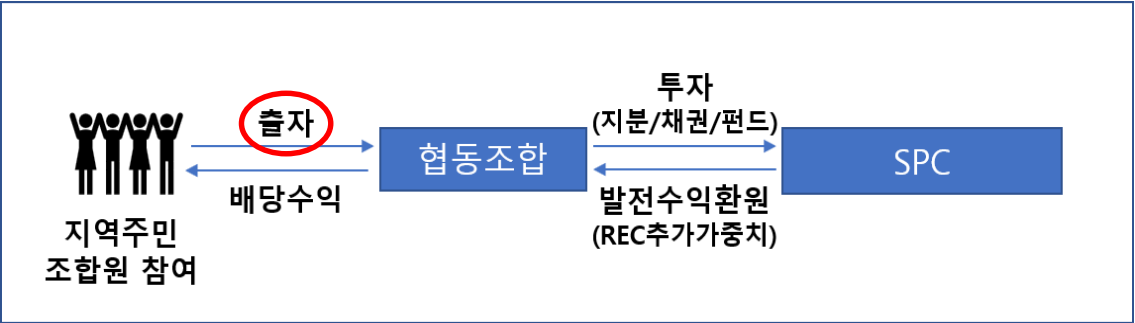
5. 개선방향 (1)

■ 이익공유 취지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 ▶ 이익공유의 취지와 정의, 원칙, 구조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 영국, 스코틀랜드, 호주 NSW, 빅토리아주 등에서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원칙, 정의, 배경, 이익공유 방식, 전달 메커니즘, 관리체계, 우수사례 등을 제시
- ▶ 주민들의 실질적인 투자 참여 강화
 - 주민 출자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보상과 구분)
 - 인당 투자한도 제한, 참여 범위 확대 등의 방안 고려

<영국 풍력이익공유의 6대 원칙>

 Timely	시의성	 Inclusive	포용성
 Transparent	투명성	 Fair	공정성
 Constructive	건설적	 Unconditional	무조건성



- ▶ 이익공유 등록시스템 마련하여 건전한 관리체계 수립
 -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투명성(Transparency)'을 우선 순위 원칙으로 제시, Government Community Benefit Register에 정보 등록하게 하여, 3~5년마다 진행상황을 포괄적으로 검토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관리시스템을 마련, 주민참여 REC 가중치 사용내역, 주민참여 비율, 참여인원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

5. 개선방향 (2)

■ 이익공유의 방향 전환, 지역상생기금 조성

▶ 소규모 사업은 현행 주민참여 제도 적용, 대규모 사업은 사업자가 적절한 규모의 지역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 고려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은 매우 다양하며, 공동소유권 이외에도 지역 상생을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음
- 덴마크는 최근 지역주민 소유권 우선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해 폐지, 사업자가 지자체에 기금 조성하도록 하는 Green Pool 제도 신설 ('20년 2월, 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

▶ 영국에서는 사업자가 적정 규모의 지역사회 기금을 조성,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용하는 이익공유가 일반적

- 이익공유 규모는 MW당 약 1천만원(5천 파운드) 이내로 권고
- 기금은 어업지원, 지역사회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직접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지원함
- 사업자는 기금을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용. 기금 집행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신력 높임

<영국 램피온 해상풍력(400MW) 지역사회 기금 예시>



- 해산물 포장 및 가공 장비 구매 지원
 - 선박, 낚시 장비 등 어업 장비 보관 및 현대화
 - 수산물 신선한 운송을 위한 얼음공장 설치
 - 해양 안전, 측량, 조사를 위한 선박 지원
-
- 지역 학교 교실 내 LED 스크린 구매 지원
 - 지역 내 스카우트 동호회 장비구매 지원
 - 지역 내 학생들 안전메커니즘 개발 지원
 - 어촌계 여성단체 활동기금 지원

출처 : <http://www.westofmorecambe.com>

감사합니다